제8차 소재·부품·장비
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안건④

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 안정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

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

2021. 11. 17.

관계부처 합동

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(요약)

Ⅰ. 추진배경

□ 일본 수출규제를 넘어 **글로벌 공급망재편 대응까지 확장**한 '소부장 2.0 전략' 추진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과 **특허분쟁 발생 위험 증가**

< 이차전지 분리막 소재 국산화 관련 한-일 특허분쟁 사례 >

이차전지분리막 소재 업체 **A社**(日) **한국시장 점유율 하락**((`11) 24 % → (`19) 15%) ⇒ **W社**(韓) **한국시장 점유율 상승**('19) ⇒ **A社(日)가 W社**(韓) **견제를 위해 특허소송 제기**('20.1)

* 수출기업 중 **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**이 '10~'14년 동안 **1.7%**에서 '14~'18년 동안 **17.3%로 약 10배 증가**('14, '18, 지식재산연구원)

□ 특허분쟁 대응은 **기간·비용 소모**가 크며, 패소하면 **손해배상**도 발생하므로, **중소기업**에 **큰 부담**으로 작용

* 특허소송(1심) 기간/비용('18, WIPO) : (美) 18~42개월/11.5~69억원, (韓) 10~18개월/1.7~4.6억원

**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중간값('19, 특허청) : (美,'97~'16) 65.7억원 (韓,'97~'17) 6천만원

< 반도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사례 >

■ (S社) 블랭크마스크를 처음 시장에 내놓았을 때, 일본 업체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했고, 최종 승소하기까지 **특허분쟁으로 인해 지난 10여년 동안 큰 고생**('21.7, 소부장산업 성과간담회)

■ (P社) 반도체검사장비업체 P社(韓)는 '04년 F社(美)의 특허소송 4건을 5년간의 다툼 끝에 승소했으나, **100억원의 소송비용 지출 등 경영난**으로 결국 '09년 매각('13.7, 매일경제)

☞ **중소기업은 특허분쟁 대응에 어려움이 크므로 특허분쟁 지원강화 필요**

Ⅱ. 주요국의 특허분쟁 대응동향 및 시사점

□ **(해외 선도기업 전략)** 기술사업화 全주기(기술개발→제품 생산·판매)에서 경쟁사 특허·제품 상시 모니터링·분석 → **선제적 특허분쟁 예방·대비**

□ **(주요국 정책동향)** 특허분쟁 **예방·대비*를 적극 지원**하고, 특허분쟁 대응 **컨설팅·보조금** 및 **소송보험** 등 **다양한 분쟁지원수단 제공**

* 기술개발 시 **특허기반 연구개발**(IP-R&D),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한 **개발기술 보호** 등

□ **(국내 지원현황)** 분쟁위험 **회피·모니터링 및 기술보호 등 예방·대비 미흡**, 기업 수요 대비 **분쟁지원 부족**, 분쟁정보·특허경영 등 **기업 대응역량 취약**

☞ **선제적 분쟁 예방·대비 강화, 분쟁 지원수단 확충, 기업 역량강화** 등 필요

Ⅲ. 추진 전략 및 과제

【 목 표 】

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를 통한
소부장 공급망 안정 및 **해외시장 진출 활성화**

【 추진 전략 】

①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
② 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
③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분 야	주요 추진과제
1 예방·대비	1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IP-R&D전략 확산 2 특허+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 3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신규 추진
2 분쟁 지원	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 2 분쟁비용 지원수단 확충 및 다양화 3 분쟁기업 현장 밀착지원 강화
3 기반 강화	1 주요국의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 확대 2 연구자·기업CEO 대상 분쟁예방·대응 교육강화 3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 4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

1 [예방·대비]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

1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IP-R&D전략 확산

○ 소부장 기술분야 위주에서 **BIG3**(시스템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헬스), **백신** 등의 핵심 기술분야로 **IP-R&D전략 확대·고도화**(산업부·특허청, 계속)

* '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'21.10.22. 발의)'에 **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R&D사업** 추진 시 **관련 IP를 조사·분석하도록 규정**(제25조④)

** IP-R&D 전략지원 예산(특허청) : ('21) 385억원 → ('22 정부안) 400억원

< 분쟁예방을 위한 IP-R&D 전략지원 고도화 개념 >

연구개발 초기	연구개발 수행	연구개발 착수 1년 이후
▪일반 IP-R&D (기존) ▪분쟁예방 특화형 IP-R&D (추가)	(← 매일 全세계 특허 8천건 신규 생성 →)	▪R&D방향 점검·보완을 위한 후속진단 IP-R&D (신설)

○ **부처별 R&D사업 관련규정*에 IP-R&D 반영 지속 확산** (산업부·중기부 등, '22~)

* (산업부)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('15년 기반영), (중기부) R&D 사업별 관리지침 등

2 특허+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

○ 기술의 특성에 따라 **특허·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**(IP믹스전략) **제공**(특허청, '22~)

< IP믹스전략의 개념 >

【 모방(역설계)이 용이한 기술 】 제품의 형상·구조 등 쉽게 분석 또는 유추가능한 기술	→ 특허 출원
【 모방(역설계)이 어려운 기술 】 공정조건(온도·압력)과 같이 알아내기 어렵고, 비밀관리가 유리한 기술	→ 특허+영업비밀 / → 영업비밀 관리

○ 중소기업 **해외특허 출원비용 지원 확대** 및 대학·공공연 **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지원 강화**(특허청)

3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신규 추진

○ **(분쟁위험 경보)** 분쟁정보·특허DB 분석을 통해 **분쟁 고위험 기술분야·특허**를 도출하여 **업계 제공** → 자율 분쟁 예방·대비 촉진(특허청, '22~)

○ **(분쟁위험 조기진단) 소부장 등 핵심기업* 대상**으로 경쟁사 특허·제품의 모니터링·분석을 통한 **기업 맞춤형 분쟁위험 조기진단** 지원(특허청, '22~)

* 지원기업 수(개) : ('21) 2(시범실시) → ('22) 50(소부장) → ('23~) 200(소부장·BIG3 등)

2 [분쟁 지원] 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

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

○ **(대상·규모) 수출 중소·중견기업**에서 **전체 중소·중견기업**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 **지원대상*** **및 지원규모**** **확대**(특허청)

* ('21) 수출 중소·중견기업 → ('22) 외국기업, 대기업, NPE와 분쟁 중인 중소·중견기업 (분쟁 당사자가 모두 중소·중견기업인 경우 제외)

** 지원 기업수(개)/예산(억원) : ('20) 359/100 → ('21) 396/109 → ('22 정부안) 480/139

○ **(지원한도)**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**비용지원 한도**를 **연 1억원**에서 **2억원**(최대 3년간 지원)**으로 상향**(특허청, '22~)

2 분쟁비용 지원수단 확충 및 다양화

○ **(지식재산공제)** 인센티브·홍보 강화를 통해 **지식재산공제 가입**을 지속 **확대***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**분쟁비용 리스크 완화****(특허청)

* 지식재산공제 가입건수(누적, 건) : ('20) 5,206 → ('21 목표) 8,906 → ('22 목표) 12,806

** 공제 납입액의 5배 대출 가능 (건당 납입액 한도 5억원, 기업당 3건 가입 가능)

○ **(긴급경영안정자금) 특허분쟁**으로 **일시적 경영난**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**'긴급경영안정자금**(최대 10억원, 대출기간 5년)**' 대출**(중기부, 신규)

○ **(기술보호 보험) 중소기업 보유기술**에 관한 **특허분쟁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** 도입 추진(중기부, '22~)

3 분쟁기업 현장 밀착지원 강화

○ **(국내)**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간 협력으로 지역기업에 **분쟁대응 연계지원 강화**(특허청, '22~)

지역지식재산센터 (전국 25개)	분쟁대응 초동상담	**지재권분쟁 대응센터**	중소·중견기업 특허분쟁 대응 지원

※ 소기업은 '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'에서 변리사 상담, 심판·소송 등 지원

○ **(해외)** 해외시장 진출기업을 위해 현지 **분쟁대응 서비스***를 **강화**하고 **해외IP-DESK 설치지역 확대****(특허청/KOTRA)

* 현지 로펌을 통한 분쟁대응 컨설팅, 현지 분쟁 전문로펌 정보,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등

** ('21) **11개국**(중국, 미국, 일본, 유럽(독일), 인도, 동남아(태국, 베트남, 인니, 필리핀), 러시아, 멕시코) → (중장기) **13개국**(남미, 중동·아프리카 지역 담당 IP-DESK 추가)

3 [기반 강화]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1 주요국의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 확대

○ 국가별 지식재산보호 가이드북(27개국), 지재권 법·제도 개정사항, **주요 국가의 특허분쟁*** 모니터링 및 분석정보 **제공** 확대(특허청)

* ('21) 미국, 일본, 유럽, 중국 / 침해소송, 이의신청, 무효심판 → ('22,추가) 美 ITC 사건

○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분쟁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**분쟁대응 지원사업·기관 정보 원스톱 제공** 추진(특허청, '22~)

2 연구자·기업CEO 대상 분쟁예방·대응 교육강화

○ 특허분쟁 예방·대응 **교육컨텐츠 개발**하고, 산·학·연 **연구자** 및 중소기업 **CEO*와 함께 정부 R&D 수행기업****에 **온·오프라인 교육** 제공(특허청, 계속)

*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운영 교육프로그램에 특허분쟁 대응교육 반영

** **(특허청)** 특허분쟁 예방·대응 교육콘텐츠 개발·보급 → **(R&D부처)** R&D 수행기업에 교육 이수 권고

3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

○ 분쟁대응 **전문성**(변리사, 시설, 보안체계 등) 보유 민간 기관에 대한 '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*' **지정 법적근거 마련**** 및 육성(특허청, '22~)

* 국내 및 해외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 유무효, 권리범위 및 침해여부 등 판단 수행

** 「발명진흥법」에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·운영 근거규정 신설('22)

4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

○ 각 부처의 중소·중견기업 **바우처 제공 서비스***에 지재권 획득, 조사·분석, 분쟁대응 등 **IP 전주기 지원 확대**(산업부/중기부/특허청)

사업명칭(부처)	지원대상(최대금액)	IP 컨설팅 지원내용
지식재산바우처(특허청)	**스타트업**(20백만원)	**국내외 IP 획득·조사·분석, 분쟁대응 컨설팅**('22, 추가) 등
중기혁신바우처(중기부)	**제조 소기업**(50백만원)	**국내외 IP 획득, 조사·분석, 분쟁대응 컨설팅**('22, 추가) 등
수출바우처(산업부, 중기부)	**창업~중견기업**(2억원)	**국내외 IP 획득, 조사·분석, 분쟁대응 컨설팅 등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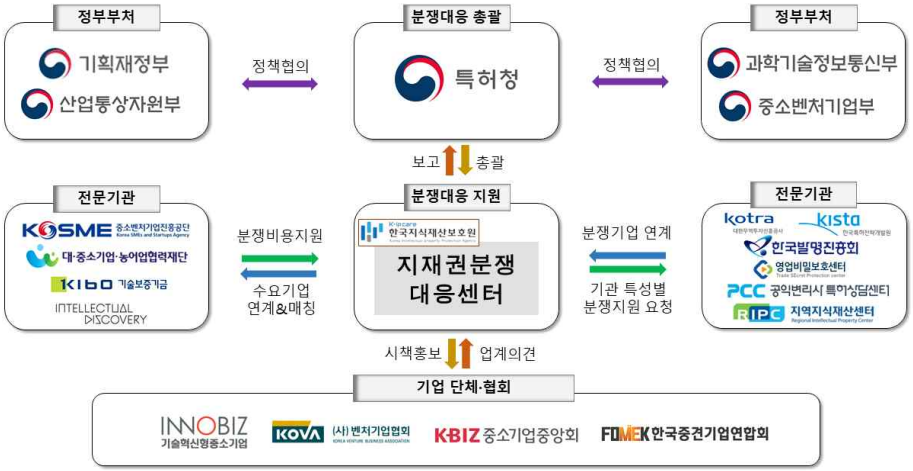
○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**IP 종합 서비스***(3년간) 지원규모 **확대****

*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·디자인 창출전략, 브랜드·디자인 개발, 해외 권리화 등

** 글로벌 IP 스타기업: ('20) 118억원(700개) → ('21) 138억원(820개) → ('22) 143억원(820개)

Ⅳ. 추진 체계

◈ **특허청**이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**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을 총괄**하고, **지재권분쟁대응센터**를 통해 **부처별 지원사업 통합·연계 제공**



Ⅴ. 향후 추진일정

구분	추진과제	일정	담당부처
예방 대비	**[전략1]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**		
	•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IP-R&D전략 확산	'21~	산업부, 중기부, 특허청 등
	• 특허+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	'22~	특허청
	•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신규 추진	'22~	특허청
분쟁 지원	**[전략2] 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**		
	•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	'22~	특허청
	• 분쟁비용 지원수단 확충 및 다양화	'22~	중기부, 특허청
	• 분쟁기업 현장 밀착지원 강화	'22~	특허청, KOTRA
기반 강화	**[전략3]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**		
	• 주요국의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 확대	'21~	특허청
	• 연구자·기업CEO 대상 분쟁예방·대응 교육강화	'22~	특허청, R&D부처
	•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	'22~	특허청
	•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	'22~	산업부, 중기부, 특허청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1

Ⅱ. 주요국의 특허분쟁 대응동향 2

Ⅲ. 국내 특허분쟁 지원현황 분석 4

Ⅳ. 추진 전략 및 과제 8

1. [예방·대비]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

2. [분쟁 지원] 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

3. [기반 강화]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Ⅴ. 추진 체계 15

Ⅵ. 향후 추진일정 16

Ⅰ. 추진배경

□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공급망 내재화로 **특허분쟁 위험 지속 증가**

○ 일본 수출규제('19.7) 이후 일본이 선도하고 있는 **소부장 기술의 국산화**에 따라 일본과 국내 기업 간 **특허분쟁 사례 발생**

< 이차전지 분리막 소재 국산화 관련 한-일 특허분쟁 사례 >

이차전지분리막 소재 업체 **A社(日) 한국시장 점유율 하락**((`11) 24％ → (`19) 15%) ⇒ **W社(韓) 한국시장 점유율 상승**('19) ⇒ **A社(日)가 W社(韓) 견제를 위해 특허소송 제기**('20.1)

○ '소부장 2.0 전략('20.7)'에 따라 공급망 관리품목을 **對日 100대 품목**에서 **글로벌 338+α개**로 확장 → **국내외 기업 간 특허분쟁 위험 가중**

* 338+α개 품목: (일본) 100개, (중국) 90개, (미국·유럽) 91개, (인도·대만·아세안) 57개

** 수출기업 중 **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**의 비율이 '10~'14년 동안 **1.7%**에서 '14~'18년 동안 **17.3%로 약 10배 증가**('14, '18, 지식재산연구원)

□ 특허분쟁은 **복잡**하고 **장기간** 소요 → **중소기업***에 **큰 부담**으로 작용

* 일반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, 첨단기술 기반의 벤처·스타트업 등도 포함

○ 특허소송 대응은 **기간·비용 소모**가 크고, 패소하면 **손해배상**도 발생

* 특허소송(1심) 기간/비용('18, WIPO) : (美) 18~42개월/11.5~69억원, (韓) 10~18개월/1.7~4.6억원

**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중간값('19, 특허청) : (美,'97~'16) 65.7억원 (韓,'97~'17) 6천만원

< 반도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사례 >

■ (S社) 블랭크마스크를 처음 시장에 내놓았을 때, 일본 업체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했고, 최종 승소하기까지 **특허분쟁으로 인해 지난 10여년 동안 큰 고생**('21.7, 소부장산업 성과간담회)

■ (P社) 반도체검사장비업체 P社(韓)는 '04년 F社(美)의 특허소송 4건을 **5년간의 다툼 끝에 승소**했으나, **100억원의 소송비용 지출 등 경영난**으로 결국 '09년 매각('13.7, 매일경제)

○ 중소기업은 효과적인 분쟁대응을 위한 **지식재산 담당조직 부족***

*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('20, 지식재산연구원) : (중소) 46.0%, (중견) 68.2%, (대기업) 80.3%

☞ **중소기업은 특허분쟁 대응에 어려움이 크므로 특허분쟁 지원강화 필요**

Ⅱ. 주요국의 특허분쟁 대응동향

1 해외 선도기업의 분쟁대응 전략

◇ **기술사업화 全주기**에서 **경쟁사 특허·제품**에 대한 **상시적 모니터링 및 면밀한 분석 → 선제적으로 분쟁 예방·대비 전략**을 마련하여 **체계적 대응**

1 기술개발 단계 * 특허기반 연구개발(IP-R&D) → 특허·영업비밀 활용 기술보호

① **(특허기반 연구개발(IP-R&D))** 경쟁사특허 **침해위험을 분석**하여 **특허분쟁 우려 없는**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**IP-R&D전략 추진**

■ **IP-R&D**(또는 **FTO**[Freedom To Operate]) : 연구개발 시 경쟁사특허 분석을 통한 **침해방지**, 침해방지 곤란 시 **무효화/외부기술도입**, 특허공백 분야 **우수특허 확보** 등 **전략**

⇒ 특허소송에서 **침해 고의성 부정 근거로 활용** 가능 → **징벌적 손해배상 예방 가능성↑**

② **(특허·영업비밀 활용 기술보호)** 개발된 기술을 **국내외 특허로 보호**하되, 비밀관리가 필요한 기술은 **영업비밀**로 관리

2 제품 생산·판매 단계 * 분쟁위험 상시 모니터링 → 방어공격전략 마련 → 소송 대응제기

① **(분쟁위험 상시 모니터링)** **분쟁위험 조기탐지**를 위해 **경쟁사특허 침해가능성**(방어) 또는 **자사특허 침해피해 여부**(공격) **상시 모니터링**

② **(방어·공격전략 마련)** 분쟁위험을 탐지할 경우, 자사의 **경쟁사특허** 및 경쟁사의 **자사특허 침해 여부**를 검토하여 **방어·공격 전략 마련**

구 분	세부 내용
방 어	경쟁사특허에 대한 **자사 제품(기술)의 비침해 입증**, **경쟁사특허 무효화 전략**(무효심판·소송 등), **제품설계변경 방안**, **라이센싱전략** 등
공 격	경쟁사 **제품(기술)의 자사 보유 특허 침해피해 여부 판단**, **침해입증 논리개발 및 피해규모**(손해액) **산정** 등

③ **(소송 대응·제기)** 경쟁사가 특허침해 주장 시 **방어전략**에 따라 대응하고, 경쟁사가 자사특허 침해 시 **경고장 발송,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**

2 주요국의 분쟁대응 정책동향

◇ **(예방·대비) 특허기반 연구개발(IP-R&D), 특허·영업비밀 활용 기술보호** 지원
◇ **(분쟁지원)** 분쟁 **컨설팅·보조금** 및 **소송보험 등 다양한 비용지원수단 제공**

1 **(예방·대비)** 분쟁우려 없는 기술개발을 위한 **특허기반 연구개발** (IP-R&D) **지원·권고,** 기술보호를 위해 **특허와 영업비밀** 병행 활용 지원

구 분	주 요 내 용
	■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자발적인* **IP-R&D전략**(FTO) 수행 권고(미국특허청) * **IP-R&D전략** 수립 시, 특허소송에서 **고의침해 불인정 및 손해배상액 경감 가능**('17, 미국특허청 발표자료) ■ 개인발명가·소기업의 국내 특허 출원 지원(미국특허청 내 발명가지원센터)
	■ 유럽 공공 R&D(Horizon 2020) 수행 중소기업 등에 **IP-R&D전략**(FTO) 수행 지원·권고 ■ 특허·영업비밀 등 지재권확보 비용·컨설팅 지원(EU집행위, IPA4SME 프로그램)
	■ 창업·중소기업 연구개발 시 **특허정보분석**(**IP-R&D전략 포함**) 지원 및 노력의무* 규정 * 과학기술·이노베이션창출촉진법 제40조의3 : R&D수행기업 등이 특허정보 활용 노력의무 ■ 특허·영업비밀 활용(Open&Close)전략, 특허·상표 해외출원 지원(일본특허청)
	■ 기업 운영 全과정에서 **특허조기경보체계**(**IP-R&D전략 포함**) 구축 지원(중국 지식산권국) ■ 기술보호전략(특허, 영업비밀 등), 국내외 특허출원 보조금 지원(중국 지식산권국)

2 **(분쟁지원)** 분쟁대응 **보조금·컨설팅** 및 **소송보험 지원, 국내외 분쟁지원**

구 분	주 요 내 용
	민간보험사의 지식재산**소송보험** 이용 가능, **IP전문관**(중국 등 10개 국가·지역) 파견
	민간 지식재산**소송보험** 인식 제고, 지역별(유럽, 중국, 인도, 남미, 동남아) **IP Helpdesk** 운영
	**해외 지적재산팀**(9개 지역)을 통해 침해조사, 분쟁대응 **보조금 지원**, **소송보험**('16) 지원
	특허·상표 등 **분쟁대응전략**(침해예방분석, 분쟁·소송 대응방안 등) **컨설팅** 및 **소송보험**('10) 지원, '해외지재권**분쟁대응 지도센터**'('19.7~) 및 '지식산권 **권리보호 지원센터**'(전국 76개) 운영

3 **(대응 기반)** 국내외 **제도·분쟁정보, 분쟁 예방·대응 교육** 및 **IP서비스 제공**

구 분	주 요 내 용
	해외 IP보호·모방상품단속 등 관련 정보제공, 해외 지재권제도 정보 제공
	IP정보 포털 운영, IP경영전략 컨설팅(IP pre-diagnostic), IP바우처 지원
	IP경영전략 컨설팅(핸즈온 지원), IP멘토링팀 스타트업 자문(IPAS)
	IP정보제공 플랫폼(worldip.cn) 운영, 해외 분쟁 예방·대응 현지 교육

Ⅲ. 국내 특허분쟁 지원현황 분석

1 그간의 지원현황

◇ **(예방·대비) 분쟁예방을 위한 IP-R&D전략, 특허출원 비용·수수료** 등 지원
◇ **(분쟁지원)** 수출기업 **분쟁컨설팅**, 분쟁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**지식재산공제** 등
◇ **(대응기반)** 다양한 **특허분쟁 정보제공,** 기업의 **특허경영 확산** 등 추진

1 특허분쟁 예방·대비

○ **(특허기반 연구개발(IP-R&D)) 분쟁예방**을 위한 **IP-R&D전략을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**에 확대 지원하고, 관련 **소요비용 세액공제 도입**

- 중소·중견기업 및 대학·연구소 대상으로 **IP-R&D전략 지원사업** 추진('09)

- **소부장** 정부 R&D사업에 **IP-R&D전략 지원을 확대***('19)하고, **IP-R&D전략 지원 법적근거**** 마련('20)

* 소부장 분야 IP-R&D전략지원 과제 수 : ('19) 35개 → ('20) 299개 → ('21) 430개
** 소재·부품·장비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제24조제1항, 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9조제4항

-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 **IP-R&D전략 비용 세액공제*** 도입('21.4)

*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(별표6)에 반영(특허조사·분석비용의 25% 세액공제)

○ **(특허 획득, 영업비밀 보호)** 특허 **수수료·비용, 출원 서류작성** 등 **특허획득 지원**과 함께 개별적으로 **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제공**

- 국내특허 출원 시 **특허청 수수료 감면**(중소 70%, 중견 30% 등)

- 중소기업에 대해 국내외 특허출원 **비용***, **서류작성**** 지원

* 특허전략개발원(국내·해외), 지역지식재산센터(해외), IP출원펀드(해외), **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

- 정부R&D사업 수행 산·학·연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**국내외 특허출원 비용을 편성**토록 허용하는 **근거 규정* 마련**('17)

*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0조제1항 (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)

- 중소·중견기업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제공('12, 영업비밀보호센터 설치)

2 특허분쟁 대응지원

○ **(특허침해 방어·공격 지원)** '**지재권분쟁대응센터**'를 통해서 수출 중소·중견기업에 **특허침해 방어·공격**에 대한 **대응전략** 제공('0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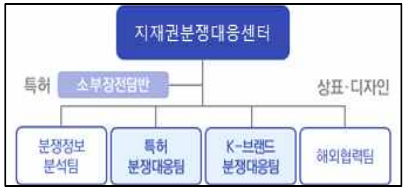
*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건수/지원건수(경쟁률) 현황 :
('18) 791/547(1.4) → ('19) 694/403(1.7) → ('20) 902/359(2.5) → **('21) 986/396(2.5)**

** 특허분쟁 대응전략 **비용 지원한도** : ('20) 5천만원/년 → ('21) **1억원/년**

< **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개요** >

■ **(목적)** 중소·중견기업 대상 **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원스톱 서비스** 제공

■ **(기능)** 국내외 **지식재산권 분쟁 모니터링·분석** 제공, 특허분쟁 시 **방어·공격 전략, 소부장 기업** 분쟁대응 **밀착 지원**



○ **(분쟁비용 부담완화)** 특허침해 방어·공격 시 중소·중견기업의 **특허분쟁 비용·자문** 등을 지원*하는 **지식재산공제사업**** 추진('19)

* 가입 6개월부터 특허분쟁 비용 대출 [납입한도 15억원, 납입액의 5배 대출 가능]

** 가입 기업 수(누적, 개) : ('19) 1,409 → ('20) 5,162 → ('21.8) 7,744

○ **(해외현지 분쟁대응)** 해외에서 **특허공격 대응, 특허 침해피해 방지** 등을 지원하는 **해외지식재산센터**(IP-DESK) **설치**('06) → 11개국* 운영('21.8)

* ('06) 중국, ('09) 베트남/태국, ('12) 미국, ('14) 독일, ('15) 일본, ('17) 인도/인니, ('20)필리핀, ('21) 러시아/멕시코

3 분쟁대응 기반구축

○ **(정보제공)** 우리기업이 특허분쟁을 **사전에 대비**할 수 있도록 **해외 특허분쟁동향 모니터링, 특허분쟁 정보*** **등 제공**(IP-NAVI)('11)

* 분쟁관련 특허·기업 정보 및 분쟁 내용은 매일, 분쟁 트렌드 분석은 월·년단위 제공

○ **(특허경영)** 지식재산경영 **우수사례 발굴·확산**('09), 지식재산경영 **인증제도*** **운영**('16) 등을 통해 **중소기업 특허경영 확산****

* 지재권 출원·등록현황, 지식재산 교육, 지식재산 담당조직·인력,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·활용, **지식재산분쟁 사전 점검,** 직무발명제도 등(10개)으로 지식재산경영 수준 평가

**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(개) : ('16) 53 → ('17) 150 → ('18) 180 → ('19) 154 → ('20) 197(총 734)

2 시사점

※ 주요국의 특허분쟁 대응동향, 그간의 지원현황 및 기업의견을 토대로 개선방향 도출

1 (예방·대비) 분쟁위험 회피·모니터링 및 개발기술 보호전략 미흡

○ 소부장 기술 외에 **중요한 기술분야**에 IP-R&D전략 지원 부족

[참고] 외국의 IP-R&D전략 지원 정책동향

•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 등은 기업들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**기술분야에 상관없이 IP-R&D전략 추진 권고 및 지원**

○ 분쟁 예방·대응을 위해 기술 보호에 **특허와 영업비밀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**하지만, 국내 기업들은 **영업비밀 활용에 소홀***

* **상품·기술보호** : (韓, 제조업기업) 특허 32.7%, **영업비밀 2.7%** ('20, 한국기업혁신조사)
(日, 니치톱기업) 특허 45.8%, **영업비밀 12.5%, 특허+영업비밀 33.3%** ('19, 일본 경제산업성)

[참고] 외국의 특허·영업비밀 활용 기술보호 사례

• **[일본 특허청('15)]**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때, 핵심기술에 대해 **특허확보** 뿐만 아니라 **비밀유지가 필요한 기술**의 **블랙박스화 전략(오픈&클로즈 전략) 지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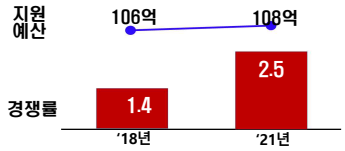
○ 해외 선도기업은 상시적인 분쟁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, 우리 기업들은 **특허분쟁위험 예측 및 대비** 활동이 미흡한 실정

* 기업의 74.2%가 '분쟁위험 예측·대비' 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수행은 42.6%에 불과
특허분쟁 위험정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로 75.4% '수행역량 부족' ('21.9. 특허청)

☞ **IP-R&D전략 확산 및 특허·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를 지원**하면서, 기업들의 상시적인 **분쟁위험 예방활동 지원** 필요

2 (분쟁 지원) 기업 수요 대비 분쟁대응지원 부족

○ 기업의 특허분쟁 **지원수요는 매년 증대**하고 있으나, **지원예산 규모는 수년째 제자리**



* 경쟁률/예산(억원) : **('18) 1.4/106** → ('19) 1.7/107 → ('20) 2.5/99 → **('21) 2.5/109**

○ **수출 중소·중견기업**만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→ 대기업* 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**내수 중소·중견기업 구제 곤란**

* B社(중소)가 악취제거기술 특허무효소송에서 H社(대기업)에 승소했으나 경영난 발생('19)

○ 중소·벤처기업은 영세하여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**막대한 비용 부담**으로 **경영불안정***이 초래되지만, **실효적 자금지원 수단 부족****

* **(美 특허소송** 1심 비용**) 11.5~69억원**('18, WIPO) 》 **(영업이익)** 중소 **1억원**, 벤처 **1.2억원**('20, 통계청/중기부)

** **지식재산공제**(가입금액의 5배 대출)로 비용지원이 가능하나, **가입 6개월 경과**후 **자금대출 가능**

[참고] 현장의 목소리(중소기업 D社)

• 미국 경쟁사의 **자사특허침해 대응방안 상담에만 이미 5천만원을 지출**했으며, 나중에 **미국 로펌**에 특허소송 의뢰를 위해 **최소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**한 상황이지만, 국내에 **특허소송비용 대출이나 지원 등 충분한 비용지원수단 부재**('21.8)

○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 서울에 있어 **지역 기업의 분쟁지원서비스 접근성**이 낮고, **중동·남미*** 등은 **해외 IP-DESK 미설치**

* **일본특허청**은 JETRO(일본무역진흥기구)를 통해 한국, 중국, 북미, 유럽, 동남아시아, 인도, **중동·아프리카**(UAE) 및 **중남미**(브라질) 등 全세계에서 **지식재산팀 운영**

☞ 특허분쟁 발생 기업들에게 **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**하고, 분쟁비용 조달 및 경영안정을 위한 **자금지원 수단 확충 필요**

3 [대응 기반] 분쟁정보·특허경영 등 기업의 분쟁대응 역량 취약

○ 기업들은 분쟁정보 수집·분석, 분쟁관련 교육 등 **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**를 **중요하게 생각**하지만, **실제 수행은 미흡**

* 기업들이 **분쟁정보 수집·분석**과 **분쟁 예방·대비교육**을 각각 **62.3%와 71.0%가 중요하다고 생각**하지만, **실제 수행 비율**은 각각 **26.1%와 21.7%**에 불과('21.9, 특허청)

○ 중소기업은 **특허경영을 통한 분쟁예방의 중요성을 인지***하고 있으나, 지식재산 담당조직·전담인력 보유** 등 **특허경영 이행은 저조**

* 중소기업 77.2%가 특허경영이 중요, 그중 78.0%가 분쟁예방 등 이유로 선택 ('15, 중기중앙회)

**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조직/전담인력 보유현황: 46.0% / 1.6명 ('20, 지식재산연구원)

☞ **기업의 자체적인 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**

Ⅳ. 추진 전략 및 과제

【 목 표 】

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를 통한
소부장 공급망 안정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

【 추진 전략 】

① **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**

② **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**

③ **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**

분 야	주요 추진과제
1 예방·대비	1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IP-R&D전략 확산 2 특허+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 3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신규 추진
2 분쟁 지원	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 2 분쟁비용 지원수단 확충 및 다양화 3 분쟁기업 현장 밀착지원 강화
3 기반 강화	1 주요국의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 확대 2 연구자·기업CEO 대상 분쟁예방·대응 교육강화 3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 4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

1 [예방·대비]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

◈ 분쟁예방을 위한 **IP-R&D전략을 확대 지원**하고, 개발된 기술의 **특허·영업비밀 보호** 강화 및 **분쟁위험 조기대응**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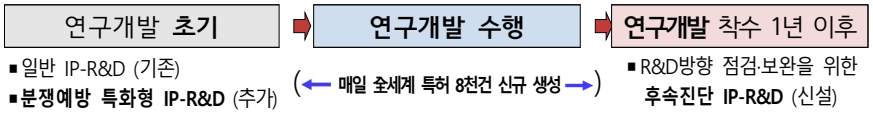
1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IP-R&D전략 확산

○ 소부장 기술분야 위주에서 **BIG3**(시스템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헬스)**, 백신** 등의 핵심 기술분야로 **IP-R&D전략 확대·고도화**(산업부·특허청, 계속)

* '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'21.10.22. 발의)'에 **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R&D사업** 추진 시 **관련 IP를 조사·분석하도록 규정**(제25조④)

** IP-R&D 전략지원 예산(특허청) : ('21) 385억원 → ('22 정부안) 400억원

< 분쟁예방을 위한 IP-R&D 전략지원 고도화 개념 >



○ 정부 R&D사업 추진 시 특허분쟁 예방 강화를 위해 **부처별 R&D 규정***에 IP-R&D전략 반영 지속 확산 (산업부·중기부 등, '22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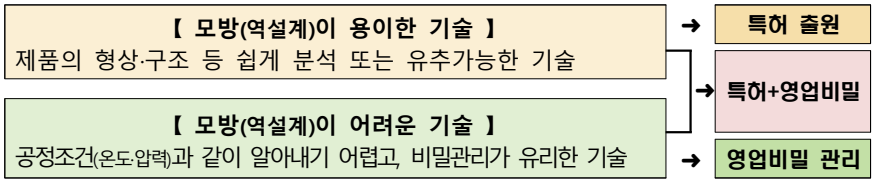
* (산업부)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('15년 기반영), (중기부) R&D 사업별 관리지침 등

2 특허+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

○ 기술의 특성에 따라 **특허·영업비밀을 활용**한 **최적의 기술보호 전략**(IP믹스전략) **제공**(특허청)

* ('21.11) IP믹스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→ ('22~) 산·학·연에 **IP믹스전략** 활용 지원

< IP믹스전략의 개념 >



○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예정인 기업들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**해외특허 출원비용 지원 확대**(특허청)

* 특허 등 해외출원 지원 관련 예산(억원) : ('21) 189.6 → ('22) 194.6

○ 영업비밀보호 인식이 낮은 대학·공공연 대상으로 **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지원 강화**(특허청)

* 영업비밀 보호컨설팅 지원대상 : ('21) 중소·중견기업 → ('22) 중소·중견기업, **대학·공공연**

3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신규 추진

○ **(분쟁위험 경보)** 분쟁정보·특허DB 분석*을 통해 **분쟁 고위험 기술분야****를 도출하여 **업계 제공** → 자율 분쟁 예방·대비 촉진(특허청, '22~)

* 기술분야별 특허분쟁 현황, 상위기업 특허점유율, NPE 보유특허, 특허 피인용 횟수 등 분석

** 분석대상 분야 :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 35대 분야 + α (배터리, AI 등 기타 트렌드 기술분야)

- 특히, **업계의 수요 기술분야***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통해 **분쟁 고위험 특허** 등 세부적인 분쟁위험 정보** 제공

* 반도체산업협회, 디스플레이협회 등 업종별 단체로부터 수요 조사 실시

** 분쟁 고위험 특허 무력화(이의신청, 무효심판 등), 회피기술 개발, 라이센싱 등에 활용

○ **(분쟁위험 조기진단)** **소부장 등 핵심기업* 대상**으로 경쟁사 특허·제품의 모니터링·분석을 통한 **기업 맞춤형 분쟁위험 조기진단** 지원(특허청, '22~)

* **소부장, BIG3, 백신 등** 관련 기업육성을 위해 **정부가 지정한 기업 2,600여개**

** 지원기업 수(개) : ('21) 2(시범실시) → ('22) 50(소부장) → ('23~) 200(소부장·BIG3 등)

< 기업 맞춤형 분쟁위험 조기진단 세부내용 >

구 분		세부내용
지원유형	방 어	‣ 신청기업의 경쟁사특허 침해여부 **모니터링, 분쟁위험특허 발굴** 및 **초동대응 안내**
	공 격	‣ 경쟁사의 신청기업 특허 침해여부 **모니터링, 침해의심제품 조사** 및 **초동대응 안내**
진단 후		‣ 위험 진단 시, 특허분쟁 사전대응 전략 연계 지원 ‣ 분쟁위험 상시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한 자체 분쟁예방 내재화 지원

2 [분쟁 지원] 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

◈ **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**하고, **분쟁비용 지원 수단을 다양화**하며, 분쟁기업에 대한 **국내외 현장 밀착지원 강화**

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

○ **(대상·규모) 수출 중소·중견기업**에서 **전체 중소·중견기업**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 **지원대상*** **및 지원규모**** **확대**(특허청)

* ('21) 수출 중소·중견기업 → ('22) 외국기업, 대기업, NPE와 분쟁 중인 중소·중견기업 (분쟁 당사자가 모두 중소·중견기업인 경우 제외)

** 지원 기업수(개)/예산(억원) : ('20) 359/100 → ('21) 396/109 → ('22 정부안) 480/139

<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내용 >

구 분		세부내용
선정기준		**지원시급성**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(특허분쟁 발생기업은 신청 시 모두 지원)
지원유형	방 어	경쟁사특허에 대한 **신청기업 제품(기술)의 비침해 입증**, 경쟁사특허 **무효화 전략**(무효심판·소송 등), **자사제품 설계변경방안**, **라이센싱전략** 등
	공 격	신청기업의 특허를 **경쟁사 제품(기술)이 침해하는지 여부 판단**, **침해 입증 논리개발 및 피해규모**(손해액) **산정** 등

○ **(지원한도)**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**비용지원 한도**를 **연 1억원**에서 **2억원**(최대 3년간 지원)**으로 상향**(특허청, '22~)

2 분쟁비용 지원수단 확충 및 다양화

지식재산공제(납입한도 15억원, 납입액의 5배 대출 가능) 가입확대와 함께 ▲**긴급경영안정자금**(최대 10억원, 신규), ▲**기술보호 정책보험**(신규)으로 **지원수단 다양화**

○ **(지식재산공제)** 인센티브*·홍보 강화를 통해 **지식재산공제 가입**을 지속 **확대****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**분쟁비용 리스크 완화**(특허청)

* IP 가치기반 보증한도 확대, 지재권분쟁·세무·회계 무료자문,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우대 등

** 지식재산공제 가입건수(누적, 건) : ('20) 5,206 → ('21 목표) 8,906 → ('22 목표) 12,806

< 지식재산공제 세부내용 >

■ 월 납입액 : 30~1,000만원 , ■ 납입액 한도 : **5억원** (기업당 3건 가능 → **기업당 15억원**)
■ **가입 6개월 이후**부터 **납입액의 5배**까지 **대출 가능**하되, **5년 이내 분할상환**

○ **(긴급경영안정자금) 특허분쟁**으로 **일시적 경영난**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'**긴급경영안정자금**(최대 10억원, 대출기간 5년)' **대출**(중기부, 신규)

<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(①&②충족) 개선(안) >

지원조건	현 행('21)	개 선(안)('22~)
①경영애로 사유	환율피해, 대형사고, **기술유출 피해**, 보호무역 피해, 일본수출규제 관련 피해 등	<추가> 국내외에서 **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 특허소송**(방어·공격) 진행
②경영애로 규모	**매출액/영업이익 10%이상 감소**, '대형사고 피해규모'가 1억원 이상	<현행과 같음>

○ **(기술보호 보험) 중소기업 보유기술***에 관한 **특허분쟁 법률비용 지원**을 위한 **기술보호 정책보험** 도입 추진(중기부, '22~)

* 보험 가입 시 보유중인 특허(특허증), 아이디어·기술(영업비밀원본증명), 임치기술(임치증)

3 분쟁기업 현장 밀착지원 강화

○ **(국내)** 분쟁발생 기업에 현장 밀착지원을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간 **분쟁대응 연계지원 강화**(특허청, '22~)

1단계		→	2단계	
지역지식재산센터 (전국 25개)	분쟁대응 초동상담		**지재권분쟁 대응센터**	중소·중견기업 특허분쟁 대응 지원

※ 소기업은 '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'에서 변리사 상담, 심판·소송 등 지원

○ **(해외)** 해외시장 진출기업을 위해 현지 **분쟁대응 서비스*를 강화**하고 **해외IP-DESK 설치지역 확대****(특허청/KOTRA)

* 현지 로펌을 통한 분쟁대응 컨설팅, 현지 분쟁 전문로펌 정보,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등

** ('21) **11개국**(중국, 미국, 일본, 유럽(독일), 인도, 동남아(태국, 베트남, 인니, 필리핀), 러시아, 멕시코) → (중장기) **13개국**(남미, 중동·아프리카 지역 담당 IP-DESK 추가)

3 [기반 강화]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◈ 특허경영 지원을 위해 **분쟁대응 정보·교육을 제공**하고, **분쟁대응 컨설팅 전문기관 육성** 및 **지식재산 서비스 확대 제공**

1 주요국의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 확대

○ 국가별 지식재산보호 가이드북(27개국), 지재권 법·제도 개정사항, **주요 국가의 특허분쟁*** 모니터링 및 분석정보** **제공** 확대(특허청)

* ('21) 미국, 일본, 유럽, 중국 / 침해소송, 이의신청, 무효심판 → ('22,추가) 美 ITC 사건
** 일일분쟁속보, 주요 분쟁사건 정보, 월간 분쟁통계, IP Trend 연차보고서 등

○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분쟁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**분쟁대응 지원사업·기관* 정보 원스톱 제공** 추진(특허청, '22~)

* 지식재산공제사업, 긴급경영안정자금, Intellectual Discovery社(국내 지식재산전문기업), 민간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등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

< 분쟁대응 지원정보 원스톱 제공 서비스 개념도 >



2 연구자·기업CEO 대상 분쟁예방·대응 교육강화

○ 특허분쟁 예방·대응 **교육컨텐츠 개발**하고, 산·학·연 **연구자*** 및 중소기업CEO** 대상으로 **온·오프라인 교육** 제공(특허청, 계속)

* 지식재산 중점대학(3개)/선도대학(11개), 기업 실무자 지식재산 온오프라인 교육(유무상) 등 활용
**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운영 교육프로그램에 특허분쟁 대응교육 반영

○ 소부장 등 **정부 R&D 수행기업**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**특허분쟁 예방·대응 관련 교육 실시**(특허청, R&D부처, '22~)

* **(특허청)** 특허분쟁 예방대응 교육콘텐츠 개발·보급 → **(R&D부처)** R&D 수행기업에 교육 이수 권고

3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

○ 특허분쟁 대응 **전문성**(변리사, 시설, 보안체계 등)을 보유한 민간 기관에 대한 '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*' **지정·육성 법적 근거 마련****(특허청, '22~)

* 국내 및 해외의 **특허 등 산업재산권 유무효, 권리범위 및 침해여부 등 판단** 수행
** 「발명진흥법」에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·운영 근거규정 신설('22)

○ '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' **지정** 및 **인력 교육** 등을 통해 특허분쟁 대응 **전문기관 육성** 추진(특허청, '23~)

4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

○ 각 부처의 중소·중견기업 **바우처 제공 서비스**에 지재권 획득, 조사·분석, 분쟁대응 등 **IP 전주기 지원 확대**(산업부/중기부/특허청)

< 바우처 지원대상별 IP 컨설팅 지원내용 개선(안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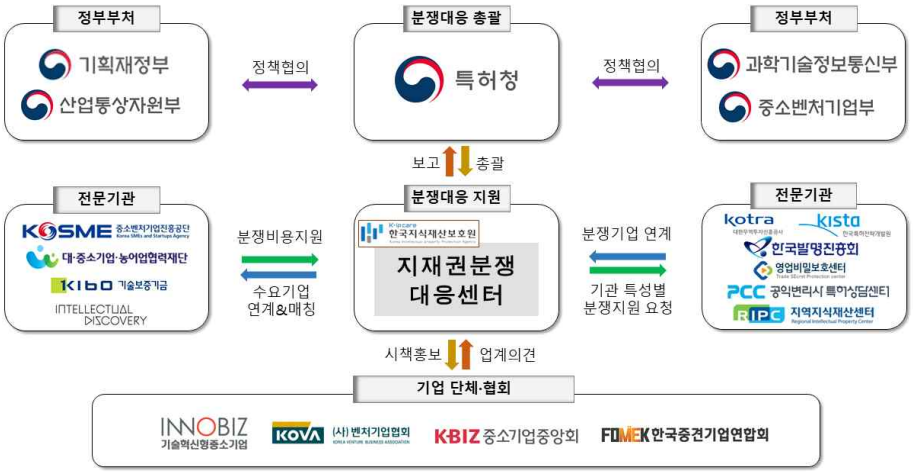
사업명칭(부처)	지원대상(금액)	IP 컨설팅 지원내용
지식재산바우처 (특허청)	**스타트업** (5백만원, 20백만원)	지식재산 가치평가, 기술이전 중개, **국내외 IP 획득·조사·분석, 분쟁대응 컨설팅**('22, 추가) 등
중기혁신바우처 (중기부)	**제조 소기업** (최대 50백만원)	경영컨설팅, 마케팅 지원, **국내외 IP 획득, 조사·분석, 분쟁대응 컨설팅**('22, 추가) 등
수출바우처 (산업부, 중기부)	**스타트업~중견기업** (최대 2억원)	정보조사, 홍보·광고, 법무·세무·회계컨설팅, **국내외 IP 획득, 조사·분석, 분쟁대응 컨설팅 등**

○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**IP 종합 서비스***(3년간) 지원규모 확대**

*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·디자인 창출전략, 브랜드·디자인 개발, 해외 권리화 등
** 글로벌 IP 스타기업: ('20) 118억원(700개) → ('21) 138억원(820개) → ('22) 143억원(820개)

Ⅴ. 추진 체계

◈ **특허청**이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**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을 총괄**하고, **지재권분쟁대응센터**를 통해 **부처별 지원사업 통합·연계 제공**



기 관	주요 역할
특허청	•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방안 수립 및 시행 총괄
지재권분쟁 대응센터	• 특허분쟁대응 지원 시책·사업 이행, 성과점검 및 보완 • 기업들의 특허분쟁 대응 애로사항 발굴,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 • 특허분쟁 모니터링 및 피해사례 종합 점검
산업부, 과기부, 중기부 등	• 기술개발 시 IP-R&D전략 지원 확산 • 분쟁비용* 확충 및 교육 지원 등 협력 * 지식재산공제, 긴급경영안정자금, 기술보호 정책보험 등
중소·중견기업 관련 단체·협회	• 정부의 특허분쟁 대응시책 홍보 협력 • 업계의견, 기업별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

Ⅵ. 향후 추진일정

구분	추진과제	일정	담당부처·기관
예방 대비	**[전략1]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**		
	•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IP-R&D전략 확산	'21~	산업부, 중기부, 특허청 등
	• 특허+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	'22~	특허청
	•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신규 추진	'22~	특허청
분쟁 지원	**[전략2] 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**		
	•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	'22~	특허청
	• 분쟁비용 지원수단 확충 및 다양화	'22~	중기부, 특허청
	• 분쟁기업 현장 밀착지원 강화	'22~	특허청, KOTRA
기반 강화	**[전략3]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**		
	• 주요국의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 확대	'21~	특허청
	• 연구자·기업CEO 대상 분쟁예방·대응 교육강화	'22~	특허청, R&D부처
	•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	'22~	특허청
	•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	'22~	산업부, 중기부, 특허청